

부산지방법원 2024. 11. 28 선고 2024가단308648 판결 [보증금 반환 청구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규

피고B

변론 종결2024. 11. 14.

판결 선고2024. 11. 2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40,000,000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, 제1항)

판사조정현

별지